

2023년 군산시 사회서비스 사업별 안내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2023년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 기준 중위소득(Ⅰ)

가구 원수	소득기준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 원)								
	100% (70%)	120%	14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지역)		
				100% (70%)	*120%	140%	100% (70%)	*120%	140%	100% (70%)	*120%	140%
1인	— (1,455,000)	2,515,000	2,910,000	— (51,662)	89,640	103,263	— (11,430)	19,850	39,753	— (53,149)	90,545	104,294
2인	3,457,000 (2,419,900)	4,148,000	4,839,000	123,511 (86,552)	147,280	173,332	68,365 (31,047)	105,944	128,505	124,093 (87,387)	148,789	175,359
3인	4,435,000 (3,104,500)	5,322,000	6,209,000	157,684 (110,461)	189,109	222,624	121,134 (50,654)	147,855	187,378	159,423 (111,677)	191,845	226,261
4인	5,401,000 (3,780,700)	6,482,000	7,562,000	191,845 (134,375)	230,142	272,226	151,504 (872,66)	196,236	249,281	194,564 (135,693)	233,952	278,492
5인	6,331,000 (4,431,700)	7,597,000	8,863,000	226,361 (157,684)	272,226	320,126	191,639 (121,134)	249,281	305,817	230,142 (159,423)	278,492	332,208
6인	7,228,000 (5,059,600)	8,674,000	10,120,000	261,015 (181,294)	309,670	359,887	235,637 (139,405)	293,801	354,030	266,386 (183,861)	320,126	379,133
7인	8,108,000 (5,675,600)	9,730,000	11,351,000	291,898 (203,267)	346,067	403,785	273,699 (164,211)	335,569	402,840	299,947 (206,304)	359,887	434,962
8인	8,988,000 (6,291,600)	10,785,000	12,582,000	320,126 (226,361)	403,785	476,875	305,817 (191,639)	402,840	481,248	332,208 (230,142)	434,962	521,613
9인	9,867,000 (6,906,900)	11,840,000	13,814,000	359,887 (246,555)	434,962	521,613	354,030 (217,566)	436,179	527,523	379,133 (250,789)	476,875	563,270
10인	10,747,000 (7,522,900)	12,896,000	15,045,000	403,785 (272,226)	476,875	563,270	402,840 (249,281)	481,248	570,140	434,962 (278,492)	521,613	625,329

* 1인가구 120%는 기준중위소득 121%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안내 270p)

2023년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 기준 중위소득(Ⅱ)

가구 원수	소득기준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 원)								
	150%	160%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지역)		
				150%	160%	180%	150%	160%	180%	150%	160%	180%
1인	3,117,000	3,325,000	3,741,000	111,677	118,789	132,975	50,654	60,944	85,637	112,823	120,087	134,375
2인	5,185,000	5,530,000	6,222,000	183,861	197,299	222,624	142,142	157,523	187,378	186,476	200,343	226,361
3인	6,653,000	7,096,000	7,989,000	237,913	255,791	284,769	206,359	229,312	264,991	242,216	261,015	291,898
4인	8,102,000	8,642,000	9,722,000	291,898	309,670	346,067	273,699	293,801	335,569	299,947	320,126	359,887
5인	9,497,000	10,130,000	11,396,000	346,067	359,887	434,962	335,569	354,030	436,179	359,887	379,133	476,875
6인	10,842,000	11,565,000	13,011,000	403,785	434,962	476,875	402,840	436,179	481,248	434,962	476,875	521,613
7인	12,162,000	12,973,000	14,594,000	434,962	476,875	521,613	436,179	481,248	527,523	476,875	521,613	563,270
8인	13,481,000	14,380,000	16,177,000	521,613	521,613	625,329	257,523	527,523	628,210	563,270	563,270	729,187
9인	14,800,000	15,787,000	17,760,000	563,270	563,270	729,187	570,140	570,140	717,192	625,329	625,329	934,511
10인	16,120,000	17,194,000	19,344,000	625,329	625,329	729,187	628,210	628,210	717,192	729,187	729,187	934,511



연령기준표



연 령	출생연도	연 령	출생연도	연 령	출생연도
만 0세	2023년생	만 35세	1988년생	만 70세	1953년생
만 1세	2022년생	만 36세	1987년생	만 71세	1952년생
만 2세	2021년생	만 37세	1986년생	만 72세	1951년생
만 3세	2020년생	만 38세	1985년생	만 73세	1950년생
만 4세	2019년생	만 39세	1984년생	만 74세	1949년생
만 5세	2018년생	만 40세	1983년생	만 75세	1948년생
만 6세	2017년생	만 41세	1982년생	만 76세	1947년생
만 7세	2016년생	만 42세	1981년생	만 77세	1946년생
만 8세	2015년생	만 43세	1980년생	만 78세	1945년생
만 9세	2014년생	만 44세	1979년생	만 79세	1944년생
만 10세	2013년생	만 45세	1978년생	만 80세	1943년생
만 11세	2012년생	만 46세	1977년생	만 81세	1942년생
만 12세	2011년생	만 47세	1976년생	만 82세	1941년생
만 13세	2010년생	만 48세	1975년생	만 83세	1940년생
만 14세	2009년생	만 49세	1974년생	만 84세	1939년생
만 15세	2008년생	만 50세	1973년생	만 85세	1938년생
만 16세	2007년생	만 51세	1972년생	만 86세	1937년생
만 17세	2006년생	만 52세	1971년생	만 87세	1936년생
만 18세	2005년생	만 53세	1970년생	만 88세	1935년생
만 19세	2004년생	만 54세	1969년생	만 89세	1934년생
만 20세	2003년생	만 55세	1968년생	만 90세	1933년생
만 21세	2002년생	만 56세	1967년생	만 91세	1932년생
만 22세	2001년생	만 57세	1966년생	만 92세	1931년생
만 23세	2000년생	만 58세	1965년생	만 93세	1930년생
만 24세	1999년생	만 59세	1964년생	만 94세	1929년생
만 25세	1998년생	만 60세	1963년생	만 95세	1928년생
만 26세	1997년생	만 61세	1962년생	만 96세	1927년생
만 27세	1996년생	만 62세	1961년생	만 97세	1926년생
만 28세	1995년생	만 63세	1960년생	만 98세	1925년생
만 29세	1994년생	만 64세	1959년생	만 99세	1924년생
만 30세	1993년생	만 65세	1958년생	만 100세	1923년생
만 31세	1992년생	만 66세	1957년생	만 101세	1922년생
만 32세	1991년생	만 67세	1956년생	만 102세	1921년생
만 33세	1990년생	만 68세	1955년생	만 103세	1920년생
만 34세	1989년생	만 69세	1954년생	만 104세	1919년생

※ 상기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됨
(다른 복지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목 차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9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3
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단가 현황	14
4. 언어발달지원사업	15
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서비스단가 현황	16
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17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1
8.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2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
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28
②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도개발)	33
③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35
④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A:수중, B:마루)	38
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도개발)	40
⑥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42
⑦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44
⑧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꿈을jobja’	47
⑨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49
⑩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51

목 차

11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구:노인정서지원)	53
12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56
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58
14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60
15 성인심리지원서비스	62
16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복지부개발)	64
1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69
1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73
12.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	77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81
14. 에너지 바우처 사업	85
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89
16.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93
1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97
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1
19.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사업	105
20. 첫만남이용권사업	109
[부록] 2023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1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006001)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미만의 <u>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u>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table border="1" data-bbox="368 454 1497 846"> <tr> <td>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우선 활용(⑤의 경우 제외)</td> </tr> <tr> <td>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td> </tr> <tr> <td>③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td> </tr> <tr> <td>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td> </tr> <tr> <td>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td> </tr> <tr> <td>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td> </tr> </table> 단 위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 가능하나 실제 생활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 지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만12세이하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지원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서비스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입원일 및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가능)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우선 활용(⑤의 경우 제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우선 활용(⑤의 경우 제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24시간/월27시간/월40시간 (1회 방문시 최소 2시간 이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제공기간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정부보조금+ 본인부담금) (단위: 원) <table border="1" data-bbox="368 1585 1458 192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월24시간(A형)</th> <th colspan="3">월27시간(B형)</th> </tr> <tr> <th>지원액(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h>지원액(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td> <td>398,400</td> <td>398,400</td> <td>면제</td> <td>448,200</td> <td>434,750</td> <td>13,450</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나형)</td> <td>398,400</td> <td>374,500</td> <td>23,900</td> <td>448,200</td> <td>434,750</td> <td>26,900</td> </tr> <tr> <td>※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C형-월40시간)</td> <td colspan="3"></td> <td>664,000</td> <td>664,000</td> <td>면제</td> </tr> </tbody> </table> ※ 시간당 단가 : 16,600원/인정시간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시 최소 2시간 이상 원칙,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산출 	구 분	월24시간(A형)			월27시간(B형)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398,400	398,400	면제	448,200	434,750	13,45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나형)	398,400	374,500	23,900	448,200	434,750	26,900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C형-월40시간)				664,000	664,000	면제
구 분	월24시간(A형)			월27시간(B형)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398,400	398,400	면제	448,200	434,750	13,45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나형)	398,400	374,500	23,900	448,200	434,750	26,900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C형-월40시간)				664,000	664,000	면제																													
<p>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소)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군산재가사회서비스센터, 나눔노인케어센터, 복받는실버요양센터 																																		
<p>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20일까지(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 발달재활서비스(008001)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3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p>사업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만 18세 생일 달까지/ 지원연장은 재학증명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중복 장애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복이음 연계) 기타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서식4-1)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5만원 한도 내 서비스 이용가능(1회 50분 기본, 제공기관별 단가현황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 ※ 의료행위인 물리, 작업치료 등 제공 불가 서비스유형 :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재가방문시 시군 사전승인 필요)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소득기준</td> <td style="width: 25%;">총 구매력</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 (다형)</td> <td rowspan="5">월 25만원</td> <td rowspan="5">=</td> <td>바우처 지원액</td> </tr> <tr> <td>차상위 계층 (가형)</td> <td>월 25만원</td> </tr> <tr> <td>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td> <td>월 23만원</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td> <td>월 21만원</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td> <td>월 19만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본인부담금</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면제</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2만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4만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6만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8만원</td> </tr> </table>	소득기준	총 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	바우처 지원액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5만원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3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	월 21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	월 19만원				+	본인부담금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소득기준	총 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	바우처 지원액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5만원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3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			월 21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			월 19만원																																												
			+	본인부담금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p>서비스 제공기관</p>	<p>20개소) 군산언어심리센터,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군산언어발달연구소,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에디슨아동발달센터,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이화아동발달조기교육원,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EYE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소리엘언어심리센터,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움직임놀이터, 재미아이발달운동센터, 브레인톡,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군산사랑나무운동발달센터,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 군산공감발달연구소</p>																																														
<p>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2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로 관리하는 등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초과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단가 현황

(단위:원)

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비스 구분	언어 재활	미술 재활	음악 재활	행동 재활	놀이 재활	감각운동 발달재활	기 타 (재기방문)
군산언어 심리센터	공단대로 441, 2층(나운동상우빌딩) ☎ 464-7120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	50,000 (-)	-	-	-	-	청능 50,000 (-)
군산언어 발달연구소	수송로 163, 3층 (수송동,예봉프라자) ☎ 465-5997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50,000 (62,500)	-	-	50,000 (62,500)	감각50,000 (62,500)	인지 50,000 (62,500)
그린맘 심리발달 연구소	월명로 215,403호 (수송동,씨티월드) ☎ 466-6454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50,000 (62,500)	50,000 (62,500)	-	50,000 (62,500)	-	
군산예술 심리치료 연구소	수송남로20, 5층 (수송동,뉴그린빌딩) ☎ 468-8396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50,000 (62,500)	50,000 (62,500)	50,000 (62,500)	-	-	
에다스이동 발달센터	신평안길 54-3 101호(자곡동,씨넬빌) ☎ 464-9910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50,000 (62,500)	-	-	-	-	심리운동 50,000 (62,500)
이선자 인지언어 치료연구소	수송동로105/702-101 (수송동,오투로타워) ☎ 452-3642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	-	50,000 (62,500)	-	-	
초록숲인지 언어심리 상담센터	대학로 245, 202호 (나운동,라파빌딩) ☎ 465-9999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50,000 (62,500)	-	-	-	-	인지 50,000 (62,500)
이화아동 발달조기 교육원	청소년회관로 47-7 (송풍동) ☎ 471-6040	기관방문 (재기방문)	-	50,000 (62,500)	-	-	-	-	
맑은소리 아동발달 센터	수송로 257, 3층 (마장동,금강빌딩) ☎ 910-7555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80,000)	50,000 (80,000)	-	-	-	-	
아이전북 심리상담 발달연구소	축동1길 7,4층 (수송동,성우빌딩) ☎ 466-8322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5,000)	50,000 (65,000)	50,000 (65,000)	50,000 (65,000)	-	-	
아리울언어 심리연구소	공단대로292, 3층 (수송동,백토빌딩) ☎ 465-7808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50,000 (62,500)	-	-	-	-	
소리엘언어 심리센터	나운로4,306호 (문화동,현대코아3층) ☎ 465-9799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	-	-	-	-	
재미아이 발달운동 센터	신지길29(지곡동) ☎ 910-1304	기관방문 (재기방문)	-	-	-	-	-	감각44,000 (-) 운동44,000 (-)	
움직임 놀이터	나운로4, 303호 (문화동, 현대코아) ☎ 442-0575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62,500)	50,000 62,500 (62,500)	50,000 (62,500)	62,500 (62,500)	50,000 (62,500)	-	재활심리 50,000 (62,500) 심리운동 84,000 (84,000)
피터팬 음악놀이 치료센터	나운안길 19, 202호 (나운동, G빌딩) ☎ 464-9592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50,000 (62,500)	50,000 (62,500)	-	-	-	인지 50,000 (62,500)
브레인톡	하산길19-3(나운동) ☎ 910-9003	기관방문 (재기방문)	-	-	-	-	50,000 (-)	-	재활심리 50,000 (-)
우리봄소리 상담센터	공단대로 396, 3층 (나운동,고려빌딩) ☎ 242-4192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	50,000 62,500 (-)	-	-	65,000 70,000 (-)	감각50,000 62,500 (-)	재활심리 65,000 70,000 (-)
군산사랑 나무운동 발달센터	나운안1길 19, 201호(나운동, G빌딩) ☎ 468-0942	기관방문 (재기방문)	-	-	-	-	-	운동50,000 (62,500)	
아이드림 운동발달 연구소	대학로 342, B1층 (나운동, 26빌딩) ☎ 465-1774	기관방문 (재기방문)	50,000 (62,500)	-	-	-	-	-	심리운동 50,000 (62,500)
군산공감 발달연구소	옥산면 당북길 33,201호(LK빌딩) ☎910-3330	기관방문 (재기방문)	-	-	-	-	-	감각62,500 (62,500)	

4. 언어발달지원(008002)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3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p>사업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동일 가구 내 두명 이상 바우처 서비스 각각 제공 가능) ㉔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㉔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㉔ 제외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월22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가능(1회 50분 기본, 제공기관별 단가현황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㉔ 변경 유형 : 소득 수준의 변화로 인해 본인부담금 변경(등급 변경/ 수시) ㉔ 변경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본인 신청 (서식 사용)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 결정·전송 :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이음에 변경내용 입력·전송 *매월 27일 18:00까지 행복이음을 통해 전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익월 1일부터 변경 내용 적용 - 통지 :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전산처리 완료 후 결과 통지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소득기준</td> <td style="width: 25%;">총 구매력</td> <td style="width: 25%;">바우처 지원액</td> <td style="width: 25%;">본인부담금</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 (다형)</td> <td rowspan="4">월 22만원</td> <td>월 22만원</td> <td>면제</td> </tr> <tr> <td>차상위 계층 (가형)</td> <td>월 20만원</td> <td>2만원</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td> <td>월 18만원</td> <td>4만원</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td> <td>월 16만원</td> <td>6만원</td> </tr> </table>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p>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3개소) 에디슨아동발달센터,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소리엘언어심리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공동 활용 가능) 																	
<p>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매월 2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5.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서비스단가 현황

(단위: 원)

제공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비스구분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인지학습	언어발달진단
피터팬 음악놀이 치료센터	나운안1길 19, 202호 (나운동, G빌딩) ☎ 464-9592	기관방문 (재가방문)	44,000 (55,000)	-	44,000 (55,000)	-	44,000 (55,000)
소리엘 언어심리 센터	나운로 4, 306호 (문화동, 현대코아 3층) ☎ 465-9799	기관방문 (재가방문)	44,000 (55,000)		44,000 (55,000)	-	44,000 (55,000)
에디슨아동 발달센터	신평안길 54-3 101호(지곡동, 써니빌) ☎ 464-9910	기관방문 (재가방문)	44,000 (62,500)				44,000 (62,500)

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008003)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3

<p>사 업 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p>사 업 대 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이내) ※ 만6세미만 비장애인은 발달장애의심 발달재활의뢰서 및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 ▷ 서비스 지급대상자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p>서 비 스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부부상담 진행 가능 ▷ 1회당 서비스 제공기간은 개별상담(50분/월4회), 집단상담(100분 내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각각 서비스 이용자로 결정되어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해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u>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u>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 <u>집단 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 적용</u> ▷ 매 회기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가 서명 후 보관 ▷ 서비스 제공방식 :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또는 재가 상담 						
<p>서 비 스 지 원 기 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 지원연장은 1회(최대 12개월) 가능 ▷ 서비스 지원 연장 절차 : ① 이용 종료 1개월 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상태 측정 실시(우울척도(CESD-11, 16점 이상), ② 지원 연장 신청서류 제출 : 이용권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상담효과성 평가결과, 우울척도 검사결과지(종료 1개월 전) ③시군구 승인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p>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총 구매력</td> <td style="width: 33%;">바우처 지원액</td> <td style="width: 33%;">본인부담금</td> </tr> <tr> <td>월 최대 20만원</td> <td>월 16만원</td> <td>최소 월4천원~ 월4만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바우처지원액)은 월 16만원이며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 부담(제공기관은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보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 중단, 본인부담금 수납후 제공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월 16만원	최소 월4천원~ 월4만원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월 16만원	최소 월4천원~ 월4만원					
<p>서 비 스 제 공 기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p>신 청 기 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매월 2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u> ※ 예산범위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BDG001)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3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사업 대상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장애인 20%이상 선정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 및 직업훈련 중인 자 - 주간보호센터, 발달지원센터, 복지관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서비스 내용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 외부활동 30%이상 참여 제공기관은 지역사회 다양한 협력기관을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주간활동 이용자의 점심식사는 이용자 자부담(제공기관별 가격공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서비스 비용 지급 서비스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제공인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 : 60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기준 적격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평생교육사, 국가기술자격법상 직업상담사 등 주간활동서비스 (예비)제공인력 이론교육(30시간), 현장실습(24시간)이수 必 																							
서비스 지원기간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3년마다 갱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불필요 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 ① 신청(장애인, 보호자 및 직권신청 가능)② 신청 접수(읍면동) ③ 신청자 송부(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④ 조사 실시 및 결과 송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시군구, 광역시) ⑥ 선정통보서 발송(시군구→신청인,보호자) 																							
바우처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5,570원, 그룹별(1~3인) 차등단가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384 1491 1465 1653"> <thead> <tr> <th>구분</th> <th>1인 그룹</th> <th>2인 그룹</th> <th>3인 그룹</th> </tr> </thead> <tbody> <tr> <td>적용(단가)요율</td> <td rowspan="2">150%</td> <td>100%</td> <td>80%</td> </tr> <tr> <td>그룹당 총 지급률</td> <td>200%</td> <td>240%</td> </tr> </tbody> </table> 급여유형 및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table border="1" data-bbox="384 1738 1458 1939"> <thead> <tr> <th>구분</th> <th>기본형</th> <th>확장형</th> </tr> </thead> <tbody> <tr> <td>주간활동제공시간</td> <td>월132시간</td> <td>월176시간</td> </tr> <tr> <td>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td> <td>-</td> <td>△22시간</td> </tr> <tr> <td>총 급여량</td> <td>월132시간</td> <td>월154시간</td> </tr> </tbody> </table> 	구분	1인 그룹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단가)요율	150%	10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제공시간	월132시간	월176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22시간	총 급여량	월132시간	월154시간
구분	1인 그룹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단가)요율	150%	10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제공시간	월132시간	월176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22시간																						
총 급여량	월132시간	월154시간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소) (유)좋은이웃, 사회적협동조합 자운, 감사합니다협동조합, 행복나눔장애가족공동체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1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 예산범위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 																							

8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BDG002)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3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p>사업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인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 가능 (중복이용 불가) 제외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형 :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단,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최대 2개 그룹을 담당 가능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p>제공인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 : 60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기준 적합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평생교육사, 국가기술자격법상 직업상담사 등 												
<p>서비스 지원기간 및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격 유효기간 : 만18세가 도래하는 생일까지 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 ① 신청(장애인/보호자/전담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② 신청접수(읍면동) ③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④ 선정통보서 수령(장애인/보호자) 주민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방법 및 기관정보 안내 												
<p>바우처지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5,57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406 1608 1481 1771"> <thead> <tr> <th>구분</th> <th>2인 그룹</th> <th>3인 그룹</th> <th>4인 그룹</th> </tr> </thead> <tbody> <tr> <td>적용요율</td> <td>100%</td> <td>90%</td> <td>80%</td> </tr> <tr> <td>그룹당 총 지급률</td> <td>200%</td> <td>270%</td> <td>3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66시간(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 월~토(0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70%	320%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70%	320%										
<p>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소) (유)좋은이웃, 행복나눔장애가족공동체 												
<p>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2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 예산범위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A:수중, B:마루)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꿈을jobja’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북지부개발1, 도개발 2, 시군구공동 11, 시개발 2)

사업군	사업명	제공기관	제공인력수	비고
계	16개 서비스	80(1)	316	
아동재활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시장형)	23	126	
	영유아발달지원(도개발)	7	34	
	아동정서발달지원	7	29	
아동역량개발 (3)	아동청소년비전형성	5	16	
	글로벌마인드형성	4	23	
	청소년비전형성(꿈을 jobja)	2	6	
정신건강관리 (2)	정신건강토탈케어	5	13	
	성인심리지원	10	22	
신체건강관리 (6)	EYE1004건강두드림	5	15	
	노인맞춤형운동	2	7	
	스포츠활동건강관리(시개발)	4	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	1	2	
	장애인보조기기렌탈(도개발)	(1)	-	관외(전주): 1개소
	청년신체건강증진(북지부개발)	(1)	-	관외(전주): 1개소 ※군산에 추가확보시설 운영 예정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2)	노인문화여가토탈	7	24	
	노인맞춤형주거관리 (시개발)	2	7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는 수시 변동 가능

※ 둘 이상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 시설장바인력 공동활용 가능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형

번호	사업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계	16개 사업					
1	【01081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시장형)	임상전문가에 의한 치료설계를 바탕으로 아동심리상담, 부모상담, 아동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만18세 이하 문제행동위험군아동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순창, 부안
2	【02011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중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6세이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 계 영유아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시군 (도개발)
3	【03121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클래식 및 국악 교육을 통한 정서순화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8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 동문제아동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개발)
4	【050713】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건강상태점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서비스 (A : 수중운동 / B형 : 마루운동)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	단일등급 A수중: 108 B마루: 60	단일등급 A수중: 12 B마루: 1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5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중증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지체뇌병변, 근위축증, 척수장애아동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84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36	전시군 (전국사업)
6	【080513】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근골격계 마사지, 지압, 자극 요법, 체형 교정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이상 지체,뇌병변 장애 또는 근골격, 순환신경계질환자	1등급: 151200 2등급: 134400 3등급: 117600	1등급: 16800 2등급: 33600 3등급: 5040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7	【090913】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자기관리, 일상생활 향상서비스,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정신장애인 또는 정 신과적 소견자	180	20	전시군 (시군개발)
8	【131113】 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꿈을 jobja'	비전형성, 진로탐색 및 직업교육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13세~만24세 -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전주, 군산, 익산

번호	사업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9	【13121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리더십,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부모상담 등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비전형성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 인 경우 7세 미만 가 능) * 단, 입실군·순창군만 5 세 ~ 만16세			
			-			
10	【160213】 스포츠활동건강관리 서비스	비만 및 허약체질 아동에게 알맞은 운동 계획 수립과 맞춤운동 지도 및 영양관리 서비스	-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84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36	전주, 군산, 정읍, 남원
			만5세~만18세			
			경도비만이상 아동,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이하 아동			
11	【190613】 노인문화여가토달서비스	노인의 치매예방, 정서지원, 문화여가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144	16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만60세이상			
			-			
12	【190813】 노인맞춤형주거관리 서비스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복지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1등급 : 164 2등급 : 144	16	군산, 진안, 무주, 장수
			만65세 이상			
			-			
13	【2003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통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신체 교정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단, 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1등급: 180 2등급: 160	1등급: 20 2등급: 40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만7세~만18세			
			장애청소년, 척추 측만 청소년 및 정서적 문 제행동 청소년			
14	【221513】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다문화교육 및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형성 및 리더십 증진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고창, 부안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가능)			
			-			
15	【99040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만18-39세	216	24	전시군 (복지부 개발) 추후 사업형성
			인바디 측정결과 과체중 이상(체지방률 경도비만 이상)			
			-			
16	【991613】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지원 및 심리적 문제 예방,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4등급: 12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4등급: 8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 부안
			만35세 이상			
			심리정서지원 및 심리적 문제예방이 필요한 성인			

1 【01081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목 적	•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만18세 이하 •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언어발달사업 보완대책의사소통기회활용증재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p>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 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되는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에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각 지역 병원</td> <td>- 진단서 또는 소견서</td> </tr> <tr> <td>-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td> <td>-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td> </tr> <tr> <td>-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td> <td>- 소견서(지침 74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지침 265p), RCMAS(지침 267p),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두개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1. 복지부 8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td> <td>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td> </tr> </tbody> </table>	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	- 소견서(지침 74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지침 265p), RCMAS(지침 267p),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두개 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대상자 1. 복지부 8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	- 소견서(지침 74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지침 265p), RCMAS(지침 267p),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두개 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대상자 1. 복지부 8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2. 욕구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 결과지 제출(자아존중감 척도지 제외) *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p>제공기관 및 제공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자격기준은 일치해야 함 <p><슈퍼바이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이후, 학사는 실무경력 5년 또는 석사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사 2급, 학교 전문상담사(전문상담교사) 취득 이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p><제공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단계 아동 상담경력)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p>※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0년 변경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p>												
<p>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시장형 월 20만원, 서비스 제공자 슈퍼바이저) <table border="1" data-bbox="335 840 1420 1086">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162,000원</td> <td>18,000원 (시장형 38,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144,000원</td> <td>36,000원 (시장형 56,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60% 이하)</td> <td>126,000원</td> <td>54,000원 (시장형 74,000원)</td> </tr> </tbody> </table> <p>※ 단, 시장형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시장형 3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시장형 5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60% 이하)	126,000원	54,000원 (시장형 74,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시장형 3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시장형 5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60% 이하)	126,000원	54,000원 (시장형 74,000원)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data-bbox="319 1299 1452 2128">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③ 미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시각적인 미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 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td> <td>주 1회 월 4회</td> <td>50분</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③ 미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시각적인 미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 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주 1회 월 4회	50분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② 놀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성취감을 느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해결에 효과 ③ 미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시각적인 미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 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주 1회 월 4회	50분										

[별표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심리 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 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 유아는 객관적 평가도구 활용 제외 가능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1]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 심리평가 결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놀이/미술/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공통(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및 관리해야 함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 활용(단, 만 3세 이하의 유아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 제외 가능)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 제공 불가 (단, 보장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 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 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 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 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Rosenberg) : 효과성 관리 보고, 사전사후 대비 20% 향상 -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또는 언어프로그램 대상자는 언어 발달척도(Pres, Selsi, Revt), 조음척도(UTAP)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1명당 1명 - 제공인력 1명당 2~3명 이내 *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소집단 프로그램(1:2~1:3) 허용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p>(23개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군산미술심리아트앤하모니, 군산언어발달연구소, 군산언어심리센터, 움직임놀이터, 에디슨아동발달센터,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소리엘언어심리센터, 아티스군산,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브레인톡, 우리봄심리상담센터,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문화예술심리상담소,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동조합,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비전센터,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노아심리발달센터</p>
신청기간	<p>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p>

2 【020113】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라북도 전 시군(도개발)														
목 적	• 조기선별(screening)과 중재(intervention)를 통해 ‘환경적 문제’(빈곤·다문화·조손·한 부모·대체 가정)에 의해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정상화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6세 이하 영유아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보완대책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td> <td>- 건강검진 검사결과</td> </tr> <tr> <td>-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td> <td>-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보건소장 추천서(직인)</td> </tr> <tr> <td>-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DenverII, K-CDRII, 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td> <td>- 추천서(직인)+발달검사결과지 (검사 자격자가 실시)</td> </tr> <tr> <td>-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td> <td>- 소견서 + 검사결과지 * 검사자의 경력사항 및 자격번호 기재</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	- 건강검진 검사결과	-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보건소장 추천서(직인)	-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DenverII, K-CDRII, 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	- 추천서(직인)+발달검사결과지 (검사 자격자가 실시)	-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	- 소견서 + 검사결과지 * 검사자의 경력사항 및 자격번호 기재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	- 건강검진 검사결과													
-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보건소장 추천서(직인)														
-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DenverII, K-CDRII, 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	- 추천서(직인)+발달검사결과지 (검사 자격자가 실시)														
-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	- 소견서 + 검사결과지 * 검사자의 경력사항 및 자격번호 기재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 일치해야 함(예시-언어발달영역 : 언어재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활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 또는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180,000원</td> <td>20,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160,000원</td> <td>40,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td> <td>140,000원</td> <td>6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table border="1" data-bbox="347 309 1452 734">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본 서비스</td> <td>발달기초영역</td> <td>-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td> <td rowspan="4">주 2회 월 8회</td> <td rowspan="4">60분</td> </tr> <tr> <td>언어발달영역</td> <td>-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td> </tr> <tr> <td>초기 인지영역</td> <td>-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td> </tr> <tr> <td>정서·사회성영역</td> <td>-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td> <td>-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잠재적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발달, 언어, 초기인지, 정서 및 행동 관련 검사 실시 - 2단계 :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단계 : 조기중재서비스 실시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 4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 5단계 : 사후검사 의무 실시, 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월 8회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부가 서비스	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월 8회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부가 서비스	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p>안전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해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p>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발달검사(DenverII, K-CDRII, KDEP, K-ASQ, KCDI 등)로 향상도(정상범위 내) 측정검사 실시 ※ 이와 별도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효과성 입증 제출용 K-CDR-R 향상도 제출 (이용자 전체)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5인 이내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시간 조절(회당 40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원하거나, 기관장의 소견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계획 시 기록 (1:1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기록)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또는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p>서비스 제공기관</p>	<p>(7개소) 창의개발협동조합, 맘투맘심리상담센터, 아이전복심리상담발달연구소,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우리봄심리상담센터, 노아심리발달센터</p>																				
<p>신청기간</p>	<p>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p>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시군개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 ~ 만18세 아동 욕구기준 <table border="1" data-bbox="309 595 1449 1153"> <thead> <tr> <th data-bbox="309 595 943 645">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 <th data-bbox="943 595 1449 645">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645 943 824">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td> <td data-bbox="943 645 1449 824">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시, 담당자가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td> </tr> <tr> <td data-bbox="309 824 943 1014">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 결핍 아동 등) -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td> <td data-bbox="943 824 1449 1014">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공공기관장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지역아동센터 제외 </td> </tr> <tr> <td data-bbox="309 1014 943 1153">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동 순위인 경우 연령이 낮은 대상자 </td> <td data-bbox="943 1014 1449 1153">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td> </tr> </tbody>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시, 담당자가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 결핍 아동 등) -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공공기관장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지역아동센터 제외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동 순위인 경우 연령이 낮은 대상자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시, 담당자가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 결핍 아동 등) -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공공기관장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 지역아동센터 제외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동 순위인 경우 연령이 낮은 대상자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일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등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 클래식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악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전통문화예술(악기) 기능 보유자 또는 전수자 ③ 문화예술교육사(전통악기)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 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p>※ 시군의 승인(공문)을 득한 이용자에게만 월4회(주1회, 1일 연속 이용) 가능</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A형: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오케스트라 및 관현악 합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타악기 인정	주 2회 월 8회	60분
	B형: 전통국악 프로그램 이론 및 실기		12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치유 서비스 제공		1:1 40분 1:6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연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회의	연 1건 이상	결과보고서 서비스 제공 확인 (사진 등 증빙)
부가 서비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 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및 국악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음악교육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	--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척도(Rosenberg), 강점난점 척도 사전사후 대비 2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A형 클래식악기) 3명 이내, (B형 전통국악기)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인력 1명당 6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센트럴심포니오케스트라,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아트심포니, 문화예술심리상담소, 협동조합 아토, 사운드오브뮤직센터, 동아음악&놀이센터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4 【050713】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목 적	•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 •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맞춤형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욕구기준</th> <th style="width: 50%;">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노인</td> <td>- 제출서류 없음</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td> <td>- 의료급여관리사의 추천서</td> </tr> </tbody> </table> <p>※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진안, 고창, 임실, 남원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서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11개 만성질환자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중 정신 및 행동장애 제외 ① 신경계질환 : G00~G37, G43~G83 ② 고혈압성 질환 : I10~I15 ③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B18, B19, K70~K77 ④ 당뇨병 : E10~E14 ⑤ 호흡기결핵 : A15~A16, A19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J44 ⑦ 대뇌혈관질환 : I60~I69 ⑧ 두개 내 손상 : S06 ⑨ 갑상선의 장애 : E00~E07 ⑩ 심장질환 : I05~I09, I20~I27, I30~I52 </td> </tr>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노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 의료급여관리사의 추천서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11개 만성질환자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중 정신 및 행동장애 제외 ① 신경계질환 : G00~G37, G43~G83 ② 고혈압성 질환 : I10~I15 ③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B18, B19, K70~K77 ④ 당뇨병 : E10~E14 ⑤ 호흡기결핵 : A15~A16, A19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J44 ⑦ 대뇌혈관질환 : I60~I69 ⑧ 두개 내 손상 : S06 ⑨ 갑상선의 장애 : E00~E07 ⑩ 심장질환 : I05~I09, I20~I27, I30~I52												
욕구기준	제출서류																			
-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노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 의료급여관리사의 추천서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11개 만성질환자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중 정신 및 행동장애 제외 ① 신경계질환 : G00~G37, G43~G83 ② 고혈압성 질환 : I10~I15 ③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B18, B19, K70~K77 ④ 당뇨병 : E10~E14 ⑤ 호흡기결핵 : A15~A16, A19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J44 ⑦ 대뇌혈관질환 : I60~I69 ⑧ 두개 내 손상 : S06 ⑨ 갑상선의 장애 : E00~E07 ⑩ 심장질환 : I05~I09, I20~I27, I30~I52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 동일)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③ 수중운동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수중운동지도 실무경력 2년 이상 ④ 마루운동은 에어로빅, 요가 등 실내운동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1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수중운동 : 월 12만원, 마루운동 : 월 7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수중운동</th> <th colspan="2">마루운동</th> </tr> <tr> <th>정부</th> <th>본인</th> <th>정부</th> <th>본인</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가격</td> <td>108,000원(90%)</td> <td>12,000원(10%)</td> <td>60,000원(90%)</td> <td>10,000원(10%)</td> </tr> <tr> <td></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20,000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70,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단 완주, 진안, 고창, 임실, 남원 거주 만성질환자만 가능) 	구분	수중운동		마루운동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서비스가격	108,000원(90%)	12,000원(10%)	60,000원(90%)	10,000원(10%)		120,000원		70,000원	
구분	수중운동		마루운동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서비스가격	108,000원(90%)	12,000원(10%)	60,000원(90%)	10,000원(10%)																
	120,000원		70,000원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점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data-bbox="303 190 1428 616"> <thead> <tr> <th data-bbox="303 190 399 257">구 분</th> <th data-bbox="399 190 1228 257">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28 190 1340 257">서비스 횟수</th> <th data-bbox="1340 190 1428 257">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3 257 399 436">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399 257 1228 436"> 건강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 건강관리 정보제공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료 시 건강관리 정보 제공 </td> <td data-bbox="1228 257 1340 436">연 3회 종료시</td> <td data-bbox="1340 257 1428 436"></td> </tr> <tr> <td data-bbox="303 436 399 616"></td> <td data-bbox="399 436 1228 616">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td> <td data-bbox="1228 436 1340 616">주 2회 월 8회</td> <td data-bbox="1340 436 1428 616">90분</td> </tr> </tbody> </table> <p>※ 1회 90분은 준비 및 정리 운동, 샤워 및 환복 시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 (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건강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 건강관리 정보제공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료 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연 3회 종료시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2회 월 8회	9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건강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 건강관리 정보제공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료 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연 3회 종료시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2회 월 8회	90분										
<p>안전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p>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증진척도,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건강상태 점검 회수 준수(연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용자 대상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2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p>서비스 제공기관</p>	<p>(2개소) 100세건강, 유순정에어로빅</p>												
<p>신청기간</p>	<p>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p>												

5 【070113】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라북도 전 시군(전국 사업)					
목 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지체 및 뇌병변 장애판정자 *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한 자			- 제출서류 없음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해당년도 초기상담기록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84,000원	3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규 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 2명 이상 있는 가구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 → 2등급, 2등급 → 1등급) *** 적용대상 : '18년 이전 재판정 이용자는 재판정 5회 기준에서 재판정 이용 횟수만큼 차감 운영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7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data-bbox="323 259 1425 784"> <thead> <tr> <th data-bbox="323 259 1121 338">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121 259 1337 338">서비스 횟수</th> <th data-bbox="1337 259 1425 338">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3 338 1121 78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td> <td data-bbox="1121 338 1337 784"> 렌탈 : 12개월 정기점검 : 연 2회 수시점검 : 제한없음 </td> <td data-bbox="1337 338 1425 784"> 제한 없음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 12개월 정기점검 : 연 2회 수시점검 : 제한없음	제한 없음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 12개월 정기점검 : 연 2회 수시점검 : 제한없음	제한 없음					
<p>안전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보호자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제공인력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 						
<p>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초기상담기록지로 같음 • 집단규모 : 해당 없음 ※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불가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p>서비스 제공기관</p>	<p>(1개소) (관외) 희망숲</p>						
<p>신청기간</p>	<p>수시모집(사업수요 향상을 위해 수시모집)</p>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목 적	• 노인성 질환자 및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기준 및 욕구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이용자는 만5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td> <td> <이하 항목중 택 1>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서 ②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 코드 확인 서류 가능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 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 </td> </tr> <tr> <td>-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td> <td>제출서류 없음</td> </tr> <tr> <td> -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만60세 이상 질환자(「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포함) 5.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중 60세 미만인 자 6. 재판정 신청자거나 가구원이 서비스 수혜 중인 경우 </td> <td>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이용자는 만5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이하 항목중 택 1>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서 ②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 코드 확인 서류 가능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 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만60세 이상 질환자(「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포함) 5.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중 60세 미만인 자 6. 재판정 신청자거나 가구원이 서비스 수혜 중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이용자는 만5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이하 항목중 택 1>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서 ②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 코드 확인 서류 가능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 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만60세 이상 질환자(「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포함) 5.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중 60세 미만인 자 6. 재판정 신청자거나 가구원이 서비스 수혜 중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68,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td> <td>151,200원</td> <td>16,800원</td> </tr> <tr> <td>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td> <td>134,400원</td> <td>33,600원</td> </tr> <tr> <td>2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기준중위소득160% 이하</td> <td>117,600원</td> <td>50,4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151,200원	16,8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	134,400원	33,6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기준중위소득160% 이하	117,600원	50,4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151,200원	16,8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	134,400원	33,600원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기준중위소득160% 이하	117,600원	50,400원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table border="1" data-bbox="347 255 1452 524">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시간</th> </tr> </thead> <tbody> <tr> <td>노인</td> <td>·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td> <td rowspan="2">주 1회 월 4회</td> <td rowspan="2">60분</td> </tr> <tr> <td>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 <td>·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 가능한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종료 시 효과성 측정 가능한 검사 의무 실시)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월 4회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월 4회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p>안전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p>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도 검사 사전사후 검사 대비 2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거동 가능 정도에 따라 기관방문과 재가방문 선택하여 제공 가능 (초기상담 시 재가방문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용자의 질병 및 신체상태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함)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p>서비스 제공기관</p>	<p>(5개소) 통증잡는백경안마원, 제일경락안마원, 행복안마지압원, 건강희생안마원, 장진지압안마원</p>										
<p>신청기간</p>	<p>연 1회 (2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 대기자 해소 위해 상반기 1회 한정하여 모집</p>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전 시군(시군개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정신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없음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head> <tr> <th style="width:50%">욕구기준</th> <th style="width:50%">제출서류(이하 택1)</th> </tr> </thead> <tbody> <tr> <td>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치매진단자는 제외)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 해당 월 서비스 제외 </td> <td> -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정신과적소견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 코드 확인서류 가능 (① 정신장애등록코드 : F20,F25,F31,F33 ②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 F00~F99 ※ 대상자 제외 코드 - F00, F02는 제외 : 장기요양 필요 다중코드에 F00, F02가 있는 경우 - 코드는 3자리 숫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 두 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 추천서(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 ①정신과전문의, ②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팀,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 Beck척도 중 택 1하여 검사한 결과지 </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이하 택1)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치매진단자는 제외)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정신과적소견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 코드 확인서류 가능 (① 정신장애등록코드 : F20,F25,F31,F33 ②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 F00~F99 ※ 대상자 제외 코드 - F00, F02는 제외 : 장기요양 필요 다중코드에 F00, F02가 있는 경우 - 코드는 3자리 숫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 두 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 추천서(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 ①정신과전문의, ②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팀,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 Beck척도 중 택 1하여 검사한 결과지																
	욕구기준	제출서류(이하 택1)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치매진단자는 제외)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정신과적소견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 코드 확인서류 가능 (① 정신장애등록코드 : F20,F25,F31,F33 ②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 F00~F99 ※ 대상자 제외 코드 - F00, F02는 제외 : 장기요양 필요 다중코드에 F00, F02가 있는 경우 - 코드는 3자리 숫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 두 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 추천서(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 ①정신과전문의, ②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팀,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 Beck척도 중 택 1하여 검사한 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대상자 1.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2. 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에서 연계된 자 3. 정신과적 소견자 : 정신과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1개 발급 제출한 자 (정신과 진단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가능) 4.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5.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① GAF척도점수 31점~70점 사이 (31점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 ② Beck척도 자살위험군(신청기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없음 																			
<Beck척도에 따른 서비스 신청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head> <tr> <th style="width:15%">고등학생</th> <th style="width:15%">대학생</th> <th style="width:15%">성 인</th> <th style="width:45%">평가</th> <th style="width: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6~19점</td> <td>14~17점</td> <td>9~11점</td> <td>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함.</td> <td></td> </tr> <tr> <td>20~23점</td> <td>18~21점</td> <td>12~14점</td> <td>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td> <td>우선고려</td> </tr> <tr> <td>24점 이상</td> <td>22점 이상</td> <td>15점 이상</td> <td>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td> <td></td> </tr> </tbody> </table>		고등학생	대학생	성 인	평가	비고	16~19점	14~17점	9~11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함.		20~23점	18~21점	12~14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우선고려	24점 이상	22점 이상	15점 이상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성 인	평가	비고																	
16~19점	14~17점	9~11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함.																		
20~23점	18~21점	12~14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우선고려																	
24점 이상	22점 이상	15점 이상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등록코드 및 진단코드가 있는 경우만 재판정(GAF, Beck척도로는 재판정 신청 불가)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p>제공기관 및 제공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지도 또는 교육 필수 - 제공인력은 각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함 → 부가서비스의 개인별 사례관리 양식에 슈퍼비전 내용 기재(상·하반기) 																													
<p>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data-bbox="331 454 1425 544">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단일등급</td> <td>180,000원</td> <td>20,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18년 이전 재판정 이용자는 재판정 5회 기준에서 재판정 이용 횟수만큼 차감 운영 ** '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 '광역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노인마음건강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횟수에 포함하여 재판정 횟수 산정 <table border="1" data-bbox="308 730 1441 846"> <thead> <tr> <th rowspan="2">이용자 선정년도</th> <th colspan="6">연도별 재판정 횟수</th> </tr> <tr>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h>2023년</th> </tr> </thead> <tbody> <tr> <td>2018년 선정</td> <td>서비스 이용</td> <td>재판정1회</td> <td>재판정2회</td> <td>재판정3회</td> <td>재판정4회</td> <td>재판정5회</td> </tr> </tbody> </table>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80,000원	20,000원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8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80,000원	20,000원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8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특성(증상,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data-bbox="331 992 1457 2143">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td> <td>주 1회 월 4회</td> <td>60분</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사례관리(관리양식에 따른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정기점검 </td> <td>월 1회</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주 1회 월 4회	60분	부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사례관리(관리양식에 따른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정기점검 	월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주 1회 월 4회	60분																											
부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사례관리(관리양식에 따른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정기점검 	월 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개인별 슈퍼비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향에 대한 중간/최종 점검 	연 2회 상·하반기
		<p><가족교육 또는 여가활동 선택적 제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교육(집단규모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분기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수립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 일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측정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제공인력,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센터 연계 :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예산액 3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정신건강의학평가척도(BPRS)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본서비스 중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은 1:5 가능 ② 부가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재가방문+집단활동+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만 기관방문형, 추가확보시설 제공 가능 ※ 제공기관 등록 시 재가방문형 기준으로 등록하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며, 다만 제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확보시설 보고(대중이용시설 제외)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규란복지재단,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청춘스케치, 혜원복지센터, 협동조합 늘 배움터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 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13세~만24세 • 욕구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td> <td>제출서류 없음</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1. 학업중단청소년 2. 사례관리 연계자 3. 학교,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td> <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학업중단 증빙서류 2.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3.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업중단청소년 2. 사례관리 연계자 3. 학교,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학업중단 증빙서류 2.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3.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업중단청소년 2. 사례관리 연계자 3. 학교,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학업중단 증빙서류 2.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3.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 취득한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③ 「자격기본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126,000원</td> <td>14,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112,000원</td> <td>28,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td> <td>98,000원</td> <td>42,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98,000원	42,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98,000원	42,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초기 욕구사정과 맞춤형 서비스 설계 통해 청소년 커리어를 높이고, 사회 적응 탄력성 제고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심리검사 및 상담		사전사후	
		비전 프로그램	비전형성 프로그램(1~3개월 차) -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성품 리더십 진로탐색 프로그램(4~12개월 차) - 적성검사 및 직업탐험 활동	주 1회 월 4회	60분
		직업교육(4~12개월 차) - 바리스타, 네일아트, 피부미용, 드론교육, 3D프린터 교육 등 맞춤형 직업교육		주 1회 월 4회	120분
부 가 서 비 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		연 1회 이상 월 1회		
※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 진행시 재료비 부담이 큰 관계로 공동재료비의 월별 관리함 (네일아트 기관 3:본인 7, 그 외 재료비 기관 5:본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선정된 대상자 사전검사와 대상자 욕구사정 및 부모 상담 통해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단계 :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부가서비스) - 3단계 : 서비스 제공보고서(상담결과 안내문)발송 및 서비스 종결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 사항 확인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부가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30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이룸, 협동조합 아토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9【131213】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포함, 임실, 순창은 만5~16세)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김제시의 경우 스마트도시(김제)지역인재육성과 중복지원 불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td> <td>제출서류 없음</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 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td> <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2. 제출서류 없음 </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 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2. 제출서류 없음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 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2.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유아교육학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20년도부터 자격기준에서 삭제. 다만 '19. 12. 31. 이전에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0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126,000원</td> <td>14,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112,000원</td> <td>28,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d> <td>98,000원</td> <td>42,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98,000원	42,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98,000원	42,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A형 월 8회, 주 2회/ B형 월 4회, 주 1회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를 통하여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회로 한정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A형 : 주 2회 월 8회	A형 : 90분
		B형 : 주 1회 월 4회	B형 : 90분
부가서비스	체험활동	B형 : 월 1회	B형 : 480분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 A형 : 주2회/월8회(회당 90분), B형 : 주1회(월3회)+월1회 체험(회당 90분+4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 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이룸, 아티스군산, 지품협동조합,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군산지부, 필레오심리상담센터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목 적	• 비만 또는 허약체질 아동의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부모교육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5세~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 ※ 전주시의 경우 장애아동 대상자 제외(장애인운동재활 서비스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② 건강관리 필요한 허약한 아동 포함 가능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아동·청소년 * 중복이용 제한 : 문체부 스포츠바우처,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관련부서 확인)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 <th style="width:10%;"></th> <th style="width:40%;">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진단서</td> <td>-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td> </tr> <tr> <td>-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td> <td></td> <td>-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또는 확인서, 예 : 인바디검사지)</td> </tr> <tr> <td>-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td> <td></td> <td>-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결과지 - 추천서(직인)</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td> <td></td> <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번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직인)</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진단서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또는 확인서, 예 : 인바디검사지)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		-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결과지 - 추천서(직인)	- 우선순위 대상자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번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직인)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진단서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또는 확인서, 예 : 인바디검사지)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		-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결과지 - 추천서(직인)																
- 우선순위 대상자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번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22. 7월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삭제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 동일해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50%;">구분</th> <th style="width:20%;">정부지원금</th> <th style="width:30%;">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108,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96,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4,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84,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	84,000원	36,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	84,000원	36,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주 2회, 월8회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 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1. 운동처방 : 대상 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 도중 변경 가능	주 2회 월 8회	① 일반아동 90분 ② 장애아동 및 특수 지원대상 60분
		2.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3. 기초검사(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 체성분검사, 기초체력측정 검사		
부가 서비스	- 계절 맞춤형 스포츠 활동(방학중) 또는 성과발표 및 대회참가	연 2회 이상	240분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3단계 :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 (이용자에게 제공) - 4단계 : 월별 건강/영양 프로그램 실시 및 비만도 측정 - 5단계 : 최소 분기별로 비만 측정자료 및 아동의 변화 상황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하고, 부모교육 실시 - 6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 7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기초체력증진(PAPS), 자존감 척도(Ros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장애아동 및 특수지원 대상 아동) 제공인력 1명당 7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 (사)한국스포츠광관마케팅협회,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 사람과사람들, 드림허브 군산에프에스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11 【190613】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자 및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문화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노인 우울감 및 인지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 욕구기준 : 정서적 지지 및 사회 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맞춤형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정서적지지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td> <td>제출서류 없음</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1. 면단위 거주자 2. 독거노인 3. 부부 단독세대 4.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자 * 주민등록상과 실체가 다른 경우는 이용 불가 </td> <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3은 제출서류 없음 4.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정서적지지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면단위 거주자 2. 독거노인 3. 부부 단독세대 4.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자 * 주민등록상과 실체가 다른 경우는 이용 불가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3은 제출서류 없음 4.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욕구기준	제출서류					
정서적지지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면단위 거주자 2. 독거노인 3. 부부 단독세대 4.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자 * 주민등록상과 실체가 다른 경우는 이용 불가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3은 제출서류 없음 4.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읍면 거주자에 한해 재판정 인정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p> <p>1. '19.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0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p> <p>2.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일치하여야 함</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모작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연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하는 민간자격 취득과정에 해당되는 강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민간자격증취득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경력 증빙) ○ 민간자격취득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경우는 교육기관의 민간자격 취득과정 강사활동을 하는 자(교육기관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빙) 사회공헌연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취미 및 자원봉사 교육 해당 민간자격 취득자 ○ 사회공헌연계프로그램 해당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회공헌프로그램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치매예방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교육학 또는 실버복지, 노인복지학과 등 노인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치매예방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3. 정서지원프로그램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정서재활프로그램 해당 민간자격 취득 자
 - 원예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푸드테라피, 심리상담 등 정서재활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자기치유 및 예술재활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4. 건강관리프로그램
 - 노인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과 운동종목 동일)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신체건강운동 해당 민간자격 취득 자
 - 체육 및 운동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레크리에이션 학과 제외)
 -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신체건강운동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5.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 이모작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자.
- 6. 가족과 의사소통 기법 관련 특강
 - 특강 주제 관련 부모교육 및 특강 경력 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44,000원	16,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읍면 거주자에 한해 재판정 인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기관은 이용자를 서비스별로 그룹핑하여 서비스 제공(단, 집단규모는 준수해야 함)
 - 초기상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 결정
 - 서비스는 선택형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으로 월4회 주1회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p><선택형 프로그램></p> <p>※ 선택형 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서비스 제공</p> <p>1. 이모작 취업연계 프로그램 : 취업으로 연계 가능한 민간자격 과정 교육 - 동화구연지도사, 종이접기지도사, 비누공예지도사, 한지공예지도사, 토탈공예지도사,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 취득과정 교육</p> <p>※ 수료증 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p> <p>2. 이모작 사회공헌 프로그램 : 공연 및 재능기부 활동,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교육 - 댄스 스포츠, 마술,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예 및 공작활동 - 자서전쓰기,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자교육 등</p> <p>※ 공연활동 또는 자원봉사활동 연1회 실시</p> <p>3. 치매예방 프로그램 : 소근육, 창작, 손근육, 과거회상 등 - 뇌운동, NIE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예 및 공작활동을 통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p> <p>4. 정서지원 프로그램 : 자기치유 및 예술재활 프로그램 - 원예 재할, 미술 재할, 음악 재할, 푸드테라피, 심리상담 등 정서 재할 관련 프로그램</p>	주 1회 월 3회	8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5. 건강관리 프로그램 - 마루운동, 요가,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등산, 트래킹, 노인 신체건강 관련 운동 종목 및 보건소 방문 등 <필수프로그램> 6. 문화여가증진 프로그램(여가활동 및 문화체험 등) - 영화 또는 공연 관람, 박물관 및 전시회 체험, 관광지 및 유적지 문화 체험, 지역축제 참여 활동 - 기관 자체 공연 및 전시회 활동 * 제공기관(추가확보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전용면적 기준 준수 ** 장소가 제공기관(추가확보시설)인 프로그램은 연 12회 중 연 6회까지만 가능하고 연 6회 이상 외부 프로그램 운영	주 1회 월 1회	120분 이상
부 가 서비스	개별관리	분기별 1회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여가만족도 척도, 삶의 질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이상 향상 • 집단 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1 : 다수(차량이동 시 차량 1대당 제공인력 1명)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협동조합늘배움터, 진로커리어연구소, 한국진로코칭센터, (사)한누리,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100세건강, 유순정에어로빅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군산시, <u>진안군</u> , <u>무주군</u> , <u>장수군</u>									
목 적	•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지원(정리정돈, 청소, 방역, 개인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함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 욕구기준 :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 * ① 시군의 자체 주거개선 및 잔수리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주거관리 서비스 미제공 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실내환경정리 및 정리정돈 서비스 미제공 → 잔수리 및 방역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욕구기준</th> <th style="width: 50%;">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td> <td>제출서류 없음</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우선)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순위 시군 추천대상 : 주거개선사업 탈락자, 노후건물로 화재예방 및 정기적 방역 필요 가구, 저장강박증이 있는 노인가구, 지자체별 잔수리 사업 수혜자이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한 주거관리 지원 필요 가구 등 2.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3.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단독세대 (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단 주민등록지는 서비스 신청지역에 한함 </td> <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자 추천서 2, 3, 제출서류 없음 </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우선)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순위 시군 추천대상 : 주거개선사업 탈락자, 노후건물로 화재예방 및 정기적 방역 필요 가구, 저장강박증이 있는 노인가구, 지자체별 잔수리 사업 수혜자이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한 주거관리 지원 필요 가구 등 2.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3.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단독세대 (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단 주민등록지는 서비스 신청지역에 한함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자 추천서 2, 3, 제출서류 없음			
	욕구기준	제출서류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우선)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순위 시군 추천대상 : 주거개선사업 탈락자, 노후건물로 화재예방 및 정기적 방역 필요 가구, 저장강박증이 있는 노인가구, 지자체별 잔수리 사업 수혜자이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한 주거관리 지원 필요 가구 등 2.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3.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단독세대 (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단 주민등록지는 서비스 신청지역에 한함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자 추천서 2, 3, 제출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22년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삭제 : 읍면 거주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집수리 및 청소(방역) 관련 자활기업 경력자 및 재직자 ②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및 청소(방역)사업 관련 경력 6개월 이상 자 ③ 건축 및 인테리어(문화재 수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소지자. 단, 도배, 장판 자격증 제외 ④ 주거개선 관련 업체 또는 지자체의 기술교육 수료자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실내외 환경 정리정돈 및 방역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③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등급 월 18만원, 2등급 월 16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5%;">정부지원금</th> <th style="width: 35%;">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 : 원거리</td> <td>164,000원</td> <td>16,000원</td> </tr> <tr> <td>2등급 : 기본</td> <td>144,000원</td> <td>16,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원거리 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등록상 거주자(시군 소재지 3km이상 등), 군산의 경우 선정 후 제공기관과 해당 제공자의 거리가 3km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등급변경 진행 • ‘22년 선정 이용자로 ’23년 종료자는 단일등급 → 등급변경 불가(‘23년 선정 이용자부터 변경등급 적용) ※ 군산의 경우 2등급으로 일괄 선정 후 제공기관과의 거리 확인 후 등급변경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원거리	164,000원	16,000원	2등급 : 기본	144,000원	16,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 원거리	164,000원	16,000원								
2등급 : 기본	144,000원	16,000원								

	<table border="1"> <tr> <td>시군</td> <td>원거리 지역</td> </tr> <tr> <td>군산시</td> <td>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td> </tr> <tr> <td>진안군</td> <td>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td> </tr> <tr> <td>무주군</td> <td>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td> </tr> <tr> <td>장수군</td> <td>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td> </tr> </table>	시군	원거리 지역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장수군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시군	원거리 지역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장수군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 가구의 욕구에 따라 주거관리, 실내·외 정리정돈(청소),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타 사업의 주거복지 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td> <td>주1회, 월4회</td> <td>60분</td> </tr> <tr> <td rowspan="2">부가 서비스</td> <td>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td> <td>필요시</td> <td></td> </tr> <tr> <td>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td> <td>분기별 1회</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1회, 월4회	60분	부가 서비스	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	필요시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분기별 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1회, 월4회	60분												
부가 서비스	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	필요시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분기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계약, 초기상담, 사전검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해당 가구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종료 및 보고서 작성, 사후 검사(종료 시 이용자 만족도 검사 의무 실시) (타 예산 주거복지 사업 연계 등 부가서비스 및 사후관리 제공)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시설안전점검(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사고유형별 처리 절차,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안전교육 실시 : 이용자 및 제공인력(연2회) 대상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관련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이용자배상(상해)보험 등 가입 •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산재보험 반드시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이용자 만족도(복지부 지침의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 13, 14, 15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대비 10% 향상 • 상·하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반기별)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명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마을활력소이음협동조합, 진로커리어연구소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및 ADHD, 인터넷과몰입, 척추측만증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게 승마를 매개로 한 정서행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 예방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장애인은 160%), 만7세~만18세 • 욕구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88 613 922 658">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th> <th data-bbox="922 613 1455 658">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8 658 922 7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발달장애 아동 - 척추측만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 ADHD 증후군 </td> <td data-bbox="922 658 1455 7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청소년은 제출서류 없음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td> </tr> <tr> <td data-bbox="288 748 922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td> <td data-bbox="922 748 1455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검사 시에, 읍면동 담당자 검사결과지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td> </tr> <tr> <td data-bbox="288 913 922 1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td> <td data-bbox="922 913 1455 1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추천서(직인) * 단, 담임교사 추천인 경우 서명 가능 </td> </tr> <tr> <td data-bbox="288 1032 922 1189"> 우선순위 대상자 1. 지체 장애인 2. 뇌병변 장애인 3. ADHD 증후군 </td> <td data-bbox="922 1032 1455 1189">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발달장애 아동 - 척추측만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 ADHD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청소년은 제출서류 없음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검사 시에, 읍면동 담당자 검사결과지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추천서(직인) * 단, 담임교사 추천인 경우 서명 가능 	우선순위 대상자 1. 지체 장애인 2. 뇌병변 장애인 3. ADHD 증후군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욕구기준(이하 항목중 택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발달장애 아동 - 척추측만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 ADHD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청소년은 제출서류 없음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검사 시에, 읍면동 담당자 검사결과지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추천서(직인) * 단, 담임교사 추천인 경우 서명 가능 										
우선순위 대상자 1. 지체 장애인 2. 뇌병변 장애인 3. ADHD 증후군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장애아동청소년만 가능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승마교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② 「말산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한 재활승마지도사(농축산부) ③ 승마관련 민간자격증, 승마경기 지도사 소지자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 심리상담 등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p>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data-bbox="327 159 1412 342">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180,000원</td> <td>20,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160,000원</td> <td>40,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등록된 장애아동청소년만 가능)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통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신체 교정(대상 장애아동에 한함) 서비스 <table border="1" data-bbox="338 546 1444 1003">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1:1~1:3)</td> <td rowspan="2">주 1회 월 3회</td> <td rowspan="2">60분</td> </tr> <tr> <td>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집단규모 12명 이하) o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td> </tr> <tr> <td>집단상담</td> <td>월 1회</td> <td>60분</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 <td>월 1회</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개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제공 2단계 :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욕구 파악 3단계 : 사후관리 및 환류(종결 리포트 작성하여 부모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1:1~1:3)	주 1회 월 3회	60분	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집단규모 12명 이하) o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	집단상담	월 1회	60분	부가 서비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1:1~1:3)	주 1회 월 3회	60분														
	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집단규모 12명 이하) o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																
	집단상담	월 1회	60분														
부가 서비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p>안전관리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p>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존감 척도(Rosenberg), 개정판 아동정서불안척도검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집단규모 : ① 교감활동, 재활승마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서비스 시작 2개월 이후 비장애아동청소년 1:3, 장애아동청소년 1:2 ② 집단상담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세부내용 및 청소년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p>서비스 제공기관</p>	<p>(1개소) 군산종합사회복지관</p>																
<p>신청기간</p>	<p>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p>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 글로벌 시대에 필수인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한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확산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7세 미만도 포함 • 욕구기준 														
	욕구기준	제출서류													
	외국어교육 및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마인드 형성을 희망하는 자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 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3. 다자녀(2명이상)가정 아동(만18세 이하) ※모든 순위 당해연도에 세대내 1명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추천서(직인)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 추천사유에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명시 2,3. 제출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이용자 중 면단위 거주자만 가능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해당 외국어 관련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사의 경우 외국어 교과 전담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외국어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결혼이민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성인력개발원, 평생교육원, 지자체에서 인증한 해당 외국어강사 교육 수료생 ② 결혼이민 전 해당국 또는 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부지원금</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162,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4,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6,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4,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1등급 이용자 중 면 단위 거주자만 가능)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26,000원	54,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26,000원	54,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 자기주도학습코칭, 비전형성프로그램(학업 성취도 평가, 발표회, 전시회 등)을 통한 리더십 증진 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맞춤형 외국어 교육 서비스 및 글로벌 마인드 교육 (스토리텔링, 단어게임, 부루마블, 프리토킹, 주제별 외국어 학습 등) 2. 원어민 문화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음식, 문화, 놀이 등)과 정서 함양 프로그램	주 2회 월 6회	A형:60분 (1:2, 90분) B형:90분
부 가 서비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 다문화 체험전시회 또는 성과향상대회	월 1회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외국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 - 2단계 : 해당 가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단계 : 사후관리 및 환류(학업성취도 등에 관한 부모 상담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글로벌 역량증진도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A형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형제자매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1:2 가능, 단 회당 서비스 시간 90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민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은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기본서비스 B형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③ 부가서비스 - A형과 B형 모두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방식 : A형 재가방문형, B형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 군산종합사회복지관(A형), 글로벌마인드형성센터(A형),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군산지부(B형), 꿈누리(B형)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 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 부안																	
목 적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 35세 이상 * 중복이용 제한 :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td> <td>제출서류 없음</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td> <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 (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 (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욕구기준	제출서류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 (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23.1월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 신규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② 심리, 상담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학위취득 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이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부부소통증진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제공인력도 해당) <p><슈퍼바이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심리, 상담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5년, 박사학위취득 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으로 학사는 실무경력 5년, 석사는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슈퍼바이저를 갖추지 못한 제공기관은 이용자 추천을 할 수 없음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 <td>180,000원</td> <td>20,000원</td> </tr> <tr> <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 <td>160,000원</td> <td>40,000원</td> </tr> <tr> <td>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50% 이하)</td> <td>140,000원</td> <td>60,000원</td> </tr> <tr> <td>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td> <td>120,000원</td> <td>80,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1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20,000원	8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20,000원	80,000원																

<p>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data-bbox="343 212 1452 459">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td> <td>주 1회 월 4회</td> <td>50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주된 호소 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사전검사 ③ 3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④ 4단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⑤ 5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주 1회 월 4회	5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주 1회 월 4회	50분						
<p>안전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p>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PI-2(MMPI-2RF가능), BDI, STAIi, PTSD 척도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자아존중감(Rog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인 이용자 가능 (필요시 이용자 동의하에 집단 상담으로 일부 운영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단,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 관련 전문 치료가 요구되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에 한해 재가방문형 인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p>서비스 제공기관</p>	<p>(10개소) 본 심리상담센터,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비전센터, 맘투맘심리상담센터,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동조합,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우리봄심리상담센터, 아름드리심리상담센터</p>								
<p>신청기간</p>	<p>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p>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라북도 전 시군(전국 사업)											
목 적	• 비만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18 ~ 39세 청년층 • 욕구 기준 : 인바디 측정결과 과체중 이상(체지방률 정도비만 이상 포함) 											
	욕구기준	제출서류										
	- 인바디 측정결과 BMI 과체중 이상 또는 체지방률 정도비만 이상	인바디 결과지 등 욕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지										
	- 우선순위 대상자 : 없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 동일해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2.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단일등급</td> <td>216,000원</td> <td>24,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216,000원	24,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216,000원	24,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12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주기</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서비스</td> <td>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td> <td> 1:3(월12회, 70분) 1:4(월12회, 90분) </td> </tr> <tr> <td>부가서비스</td> <td>-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td> <td>서비스 기간 중 1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과약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 평가 ※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 ※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구분	내용	주기	기본서비스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1:3(월12회, 70분) 1:4(월12회,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기간 중 1회
구분	내용	주기										
기본서비스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1:3(월12회, 70분) 1:4(월12회,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기간 중 1회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대비 인바디 사후 검사 3% 향상 • 집단 규모 : 1:3, 1:4(선택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관외) 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신청기간	수시모집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990301)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라북도 전 시군													
목 적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 19세 ~ 34세 * 중복이용 제한 :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요구기준</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td> <td>제출서류 없음</td> </tr> <tr> <td> 우선순위 대상자 1.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자 </td> <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보호종료(연장)확인서 2. 행복이음 서비스 의뢰 목록을 통해 확인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td> </tr> </tbody> </table>	요구기준	제출서류	-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보호종료(연장)확인서 2. 행복이음 서비스 의뢰 목록을 통해 확인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요구기준	제출서류												
-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우선순위 대상자 1.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보호종료(연장)확인서 2. 행복이음 서비스 의뢰 목록을 통해 확인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연장) 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요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재판정 소견서 제출 * 재판정 소견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비스유형 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 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 -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서비스유형 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1급 -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회당)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A형</td> <td>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td> <td>54,000원</td> <td>6,000원</td> </tr> <tr> <td>B형</td> <td>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td> <td>63,000원</td> <td>7,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출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재판정 3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54,000원	6,000원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63,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54,000원	6,000원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63,000원	7,000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3개월 10회(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사전·사후 검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재판정자인 경우 사전검사를 전 회차 사후검사로 대체 하여 사전검사 대신 상담운영(회당시간 60분) </td> <td>90분</td> <td>사전·사후 각 1회</td> </tr> <tr> <td>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td> <td>50분</td> <td>8회</td> </tr> <tr> <td>종결 상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td> <td>-</td> <td>1회</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재판정자인 경우 사전검사를 전 회차 사후검사로 대체 하여 사전검사 대신 상담운영(회당시간 60분)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50분	8회	종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재판정자인 경우 사전검사를 전 회차 사후검사로 대체 하여 사전검사 대신 상담운영(회당시간 60분)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50분	8회														
종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주된 호소 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사전검사 ③ 3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④ 4단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⑤ 5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PI-2(MMPI-2RF가능), BDI, STAi, PTSD 척도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자아존중감(Rog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인 이용자 가능 (필요시 이용자 동의하에 집단 상담으로 일부 운영 가능)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12개소)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동조합,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본 심리상담센터, 아롬드리심리상담센터, 아이전북심리상담센터, 우리봄심리상담센터,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군산아동청소년 가족상담비전센터, 맘투맘심리상담센터																
신청기간	수시모집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 장애인활동지원사업(HWG001)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 454-3173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선정방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간 : 구간에 따라 월 47시간 ~ 480시간 ▷ 급여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지원액 <table border="1" data-bbox="488 936 1449 1675"> <thead> <tr> <th>활동지원급여의 구간</th> <th>종합점수</th> <th>월 한도액</th> </tr> </thead> <tbody> <tr><td>1구간</td><td>465점 이상</td><td>7,475,000원</td></tr> <tr><td>2구간</td><td>435점 이상 ~ 465점 미만</td><td>7,007,000원</td></tr> <tr><td>3구간</td><td>405점 이상 ~ 435점 미만</td><td>6,541,000원</td></tr> <tr><td>4구간</td><td>375점 이상 ~ 405점 미만</td><td>6,074,000원</td></tr> <tr><td>5구간</td><td>345점 이상 ~ 375점 미만</td><td>5,607,000원</td></tr> <tr><td>6구간</td><td>315점 이상 ~ 345점 미만</td><td>5,140,000원</td></tr> <tr><td>7구간</td><td>285점 이상 ~ 315점 미만</td><td>4,671,000원</td></tr> <tr><td>8구간</td><td>255점 이상 ~ 285점 미만</td><td>4,205,000원</td></tr> <tr><td>9구간</td><td>225점 이상 ~ 255점 미만</td><td>3,738,000원</td></tr> <tr><td>10구간</td><td>195점 이상 ~ 225점 미만</td><td>3,271,000원</td></tr> <tr><td>11구간</td><td>165점 이상 ~ 195점 미만</td><td>2,804,000원</td></tr> <tr><td>12구간</td><td>135점 이상 ~ 165점 미만</td><td>2,336,000원</td></tr> <tr><td>13구간</td><td>105점 이상 ~ 135점 미만</td><td>1,870,000원</td></tr> <tr><td>14구간</td><td>75점 이상 ~ 105점 미만</td><td>1,403,000원</td></tr> <tr><td>15구간</td><td>42점 이상 ~ 75점 미만</td><td>936,000원</td></tr> <tr><td>특례</td><td>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td><td>734,000원</td></tr> </tbody> </table> ▷ 본인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초과 : 건강보험료에 따라 월 29,300원~187,700원 차등 부과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p>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조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사)군산시장장애인연합회, (사)한누리, (사)척수장애인협회군산시지회 ▷ 방문목욕 : 늘사랑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p>신청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 454-3173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 84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연 840시간 이내 본인부담 이용료의 40% 부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휴식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소득수준 상관없음)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선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p>※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이 불가함에 주의</p>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간 : 아동 1명당 연84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 84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연 840시간 이내 본인부담 이용료의 40% 부담
<p>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 ☎ 063-901-1131
<p>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계

☎ 454-3184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등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불가 ⊃ 본인부담금 : 없음
<p>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소)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동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p>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사업

14. 에너지 바우처 사업(TIE001)

새만금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 454-2712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 차감 																				
<p>바우처지원액</p>	<p>☞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지급) * 2022년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08 1563 1477 1783"> <thead> <tr> <th>구분</th> <th>1인 세대</th> <th>2인 세대</th> <th>3인 세대</th> <th>4인 이상 세대</th> </tr> </thead> <tbody> <tr> <td>하절기</td> <td>29,600원</td> <td>44,200원</td> <td>65,500원</td> <td>93,500원</td> </tr> <tr> <td>동절기</td> <td>248,200원</td> <td>334,800원</td> <td>445,400원</td> <td>583,600원</td> </tr> <tr> <td>계</td> <td>277,800원</td> <td>379,000원</td> <td>510,900원</td> <td>677,1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계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계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p>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2023. 05. ~ 2023. 12. / 읍면동에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 하절기 신청 관련 지자체의 편의를 위해 한전과 협조하여 기존 대상자의 전기고객번호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 ☞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 2023. 7. ~ 2023. 9. ◦ 동절기 : 2023. 10. ~ 2024. 4.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

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
☎ 454-3283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p>▷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p>서비스내용</p>	<p>▷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문화체험 - 여행 : 교통수단, 여행사, 숙박, 관광지 - 체육 : 스포츠키타, 체육용품, 체육시설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p>▷ 개인당 카드 1매 발급, 연 11만 원 지급</p> <p>▷ 본인 충전금 :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현금 충전 가능</p>
<p>서비스 제공기관</p>	<p>▷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참조)</p> <p>※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p>
<p>신청기간</p>	<p>▷ 신청방법 : 주민센터, 자동재충전, 온라인(www.munri.kr), ARS(1544-3412)</p> <p>▷ 발급기간 : 2023. 2. 1. ~ 11. 30. (* 사용기한 : 카드발급일~'23.12.31까지)</p> <p>▷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p>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16.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 454-3296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p>☞ 지원연령 : 만5~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p> <p>☞ 수급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신청인(지원대상자)과 수급자가 다를 수 있음 (신청자 정보 1회 입력으로 가구단위 수급자격 조회 가능)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p>☞ 선정순위</p> <table border="1" data-bbox="422 936 1508 1350"> <thead> <tr> <th>선정순위</th> <th>누적 이용기간</th> <th>수급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선정</td> <td>제한없음</td> <td>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지역별 배정인원에 따름</td> </tr> <tr> <td>1순위</td> <td>신규 및 30개월** 미만</td> <td>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td> </tr> <tr> <td>2순위</td> <td>신규 및 30개월** 미만</td> <td>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td> </tr> <tr> <td>3순위</td> <td>30개월 이상</td> <td>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td> </tr> <tr> <td>4순위</td> <td>30개월 이상</td> <td>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td> </tr> </tbody> </table>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지역별 배정인원에 따름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지역별 배정인원에 따름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p>서비스내용</p>	<p>☞ 1인당 매월 95천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p> <p>☞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이상</p> <p>※'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p>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p>☞ 지원금액 : <u>1인당 매월 95천원 이내, 월별 1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u></p> <p>☞ 지원기간 : <u>12개월 지원</u></p> <p>☞ 본인부담금 : 수강대상 강좌 총 금액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p>																		
<p>서비스 제공기관</p>	<p>☞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p> <p>※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접속 후 홈페이지 하단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검색 가능</p>																		
<p>신청기간</p>	<p>☞ 매년 11월 중 접수(3주 ~ 4주차, 선착순 마감)</p> <p>☞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동 직접 방문 서면신청</p>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1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GES00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
☎ 454-3244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수급자(본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연도 기준 만9세~만24세(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1998. 1. 1.부터 2014. 12. 31. 사이 출생자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 카드를 통해 연 최대 156,000원 (월 13,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2023년 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 카드를 통해 월 13,000원 전자 바우처 지급(최대 156,000원) - 1월, 7월에 6개월분(78,000원) 일괄 지급 ※ 1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 기준으로 지급 																		
<p>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 <table border="1" data-bbox="406 1344 1522 1899"> <thead> <tr> <th>카드사</th> <th>온라인 유통점</th> <th>오프라인 유통점</th> </tr> </thead> <tbody> <tr> <td>BC카드</td> <td>지마켓 옥션, 먼슬리싱(앱),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td> </tr> <tr> <td>삼성카드</td> <td>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td> </tr> <tr> <td>롯데카드</td> <td>올마이쇼핑몰</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td> </tr> <tr> <td>신한카드</td> <td>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td> <td>GS25편의점, CU편의점</td> </tr> <tr> <td>KB국민카드</td> <td>KB국카몰, 국민행복몰</td> <td>GS25편의점, CU편의점</td> </tr> </tbody> </table>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싱(앱),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국카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싱(앱),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국카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p>신청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2일까지 기존 수혜 대상자는 신규 신청 필요 없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003001)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454-5858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 대상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 예외지원대상자 가능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미적용 :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종류 : 산모식사, 수유관리, 좌욕, 체조, 아기목욕, 세탁물 관리 등 □ 제공기간 및 제공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태아유형</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서비스기간</th> <th rowspan="2">제공시간</th> </tr> <tr> <th>단축</th> <th>표준</th> <th>연장</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단태아</td> <td>첫째아</td> <td>5일</td> <td>10일</td> <td>15일</td> <td rowspan="6">1일 9시간 제공(5일/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제공기관과 계약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하고 계약서에 반영</td> </tr> <tr> <td>둘째아</td> <td>10일</td> <td>15일</td> <td>20일</td> </tr> <tr> <td>셋째아 이상</td> <td>10일</td> <td>15일</td> <td>20일</td> </tr> <tr> <td rowspan="2">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단태아</td> <td>인력1명</td> <td>10일</td> <td>15일</td> <td>20일</td> </tr> <tr> <td>인력2명</td> <td>10일</td> <td>15일</td> <td>20일</td> </tr> <tr> <td>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쌍태아</td> <td>인력2명</td> <td>15일</td> <td>20일</td> <td>25일</td> </tr> </tbody> </table>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기간			제공시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1일 9시간 제공(5일/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제공기관과 계약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하고 계약서에 반영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쌍태아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기간				제공시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1일 9시간 제공(5일/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제공기관과 계약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하고 계약서에 반영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쌍태아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구분</th> <th colspan="3">서비스기간 (일)</th> <th colspan="2">단축</th> <th colspan="2">표준</th> <th colspan="2">연장</th> </tr> <tr> <th>태아유형</th> <th>출산순위</th> <th>소득유형</th> <th>단축</th> <th>표준</th> <th>연장</th> <th>본인</th> <th>정부</th> <th>본인</th> <th>정부</th> <th>본인</th> <th>정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단태아</td> <td rowspan="3">첫째아</td> <td>A-가①형</td> <td rowspan="3">5</td> <td rowspan="3">10</td> <td rowspan="3">15</td> <td>66,000</td> <td>598,000</td> <td>266,000</td> <td>1,062,000</td> <td>598,000</td> <td>1,394,000</td> </tr> <tr> <td>A-통합①형</td> <td>146,000</td> <td>518,000</td> <td>412,000</td> <td>916,000</td> <td>797,000</td> <td>1,195,000</td> </tr> <tr> <td>A-라①형</td> <td>246,000</td> <td>418,000</td> <td>624,000</td> <td>704,000</td> <td>1,036,000</td> <td>956,000</td> </tr> <tr> <td rowspan="3">둘째아</td> <td>A-가②형</td> <td rowspan="3">10</td> <td rowspan="3">15</td> <td rowspan="3">20</td> <td>106,000</td> <td>1,222,000</td> <td>359,000</td> <td>1,633,000</td> <td>744,000</td> <td>1,912,000</td> </tr> <tr> <td>A-통합②형</td> <td>266,000</td> <td>1,062,000</td> <td>598,000</td> <td>1,394,000</td> <td>1,036,000</td> <td>1,620,000</td> </tr> <tr> <td>A-라②형</td> <td>465,000</td> <td>863,000</td> <td>896,000</td> <td>1,096,000</td> <td>1,328,000</td> <td>1,328,000</td> </tr> <tr> <td rowspan="3">셋째이상</td> <td>A-가③형</td> <td rowspan="3">10</td> <td rowspan="3">15</td> <td rowspan="3">20</td> <td>80,000</td> <td>1,248,000</td> <td>319,000</td> <td>1,673,000</td> <td>691,000</td> <td>1,965,000</td> </tr> <tr> <td>A-통합③형</td> <td>239,000</td> <td>1,089,000</td> <td>578,000</td> <td>1,414,000</td> <td>1,009,000</td> <td>1,647,000</td> </tr> <tr> <td>A-라③형</td> <td>438,000</td> <td>890,000</td> <td>857,000</td> <td>1,135,000</td> <td>1,275,000</td> <td>1,381,000</td> </tr> <tr> <td rowspan="6">쌍생아</td> <td rowspan="3">인력1명</td> <td>B-가①형</td> <td rowspan="3">10</td> <td rowspan="3">15</td> <td rowspan="3">20</td> <td>66,000</td> <td>1,590,000</td> <td>348,000</td> <td>2,136,000</td> <td>795,000</td> <td>2,517,000</td> </tr> <tr> <td>B-통합①형</td> <td>232,000</td> <td>1,424,000</td> <td>621,000</td> <td>1,863,000</td> <td>1,093,000</td> <td>2,219,111</td> </tr> <tr> <td>B-라①형</td> <td>497,000</td> <td>1,159,000</td> <td>1,018,000</td> <td>1,466,000</td> <td>1,524,000</td> <td>1,788,000</td> </tr> <tr> <td rowspan="3">인력2명</td> <td>B-가②형</td> <td rowspan="3">10</td> <td rowspan="3">15</td> <td rowspan="3">20</td> <td>188,000</td> <td>2,136,000</td> <td>639,000</td> <td>2,847,000</td> <td>1,131,000</td> <td>3,517,000</td> </tr> <tr> <td>B-통합②형</td> <td>385,000</td> <td>1,939,000</td> <td>890,000</td> <td>2,596,000</td> <td>1,432,000</td> <td>3,216,000</td> </tr> <tr> <td>B-라②형</td> <td>679,000</td> <td>1,645,000</td> <td>1,266,000</td> <td>2,220,000</td> <td>1,884,000</td> <td>2,764,000</td> </tr> <tr> <td rowspan="3">삼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td> <td>C-가형</td> <td rowspan="3">15</td> <td rowspan="3">20</td> <td rowspan="3">25</td> <td>80,000</td> <td>3,904,000</td> <td>531,000</td> <td>4,781,000</td> <td>1,195,000</td> <td>5,445,000</td> </tr> <tr> <td>C-통합형</td> <td>398,000</td> <td>3,586,000</td> <td>1,062,000</td> <td>4,250,000</td> <td>1,660,000</td> <td>4,980,000</td> </tr> <tr> <td>C-라형</td> <td>916,000</td> <td>3,068,000</td> <td>1,647,000</td> <td>3,665,000</td> <td>2,324,000</td> <td>4,316,000</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기간 (일)			단축		표준		연장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본인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정부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5	10	15	66,000	598,000	266,000	1,062,000	598,000	1,394,000	A-통합①형	146,000	518,000	412,000	916,000	797,000	1,195,000	A-라①형	246,000	418,000	624,000	704,000	1,036,000	956,000	둘째아	A-가②형	10	15	20	106,000	1,222,000	359,000	1,633,000	744,000	1,912,000	A-통합②형	266,000	1,062,000	598,000	1,394,000	1,036,000	1,620,000	A-라②형	465,000	863,000	896,000	1,096,000	1,328,000	1,328,000	셋째이상	A-가③형	10	15	20	80,000	1,248,000	319,000	1,673,000	691,000	1,965,000	A-통합③형	239,000	1,089,000	578,000	1,414,000	1,009,000	1,647,000	A-라③형	438,000	890,000	857,000	1,135,000	1,275,000	1,381,000	쌍생아	인력1명	B-가①형	10	15	20	66,000	1,590,000	348,000	2,136,000	795,000	2,517,000	B-통합①형	232,000	1,424,000	621,000	1,863,000	1,093,000	2,219,111	B-라①형	497,000	1,159,000	1,018,000	1,466,000	1,524,000	1,788,000	인력2명	B-가②형	10	15	20	188,000	2,136,000	639,000	2,847,000	1,131,000	3,517,000	B-통합②형	385,000	1,939,000	890,000	2,596,000	1,432,000	3,216,000	B-라②형	679,000	1,645,000	1,266,000	2,220,000	1,884,000	2,764,000	삼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	C-가형	15	20	25	80,000	3,904,000	531,000	4,781,000	1,195,000	5,445,000	C-통합형	398,000	3,586,000	1,062,000	4,250,000	1,660,000	4,980,000	C-라형	916,000	3,068,000	1,647,000	3,665,000	2,324,000	4,316,000
	구분			서비스기간 (일)			단축		표준		연장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본인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정부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5	10	15	66,000	598,000	266,000	1,062,000	598,000	1,394,000																																																																																																																																																																						
		A-통합①형				146,000	518,000	412,000	916,000	797,000	1,195,000																																																																																																																																																																						
		A-라①형				246,000	418,000	624,000	704,000	1,036,000	956,000																																																																																																																																																																						
	둘째아	A-가②형	10	15	20	106,000	1,222,000	359,000	1,633,000	744,000	1,912,000																																																																																																																																																																						
		A-통합②형				266,000	1,062,000	598,000	1,394,000	1,036,000	1,620,000																																																																																																																																																																						
		A-라②형				465,000	863,000	896,000	1,096,000	1,328,000	1,328,000																																																																																																																																																																						
	셋째이상	A-가③형	10	15	20	80,000	1,248,000	319,000	1,673,000	691,000	1,965,000																																																																																																																																																																						
		A-통합③형				239,000	1,089,000	578,000	1,414,000	1,009,000	1,647,000																																																																																																																																																																						
		A-라③형				438,000	890,000	857,000	1,135,000	1,275,000	1,381,000																																																																																																																																																																						
쌍생아	인력1명	B-가①형	10	15	20	66,000	1,590,000	348,000	2,136,000	795,000	2,517,000																																																																																																																																																																						
		B-통합①형				232,000	1,424,000	621,000	1,863,000	1,093,000	2,219,111																																																																																																																																																																						
		B-라①형				497,000	1,159,000	1,018,000	1,466,000	1,524,000	1,788,000																																																																																																																																																																						
	인력2명	B-가②형	10	15	20	188,000	2,136,000	639,000	2,847,000	1,131,000	3,517,000																																																																																																																																																																						
		B-통합②형				385,000	1,939,000	890,000	2,596,000	1,432,000	3,216,000																																																																																																																																																																						
		B-라②형				679,000	1,645,000	1,266,000	2,220,000	1,884,000	2,764,000																																																																																																																																																																						
삼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	C-가형	15	20	25	80,000	3,904,000	531,000	4,781,000	1,195,000	5,445,000																																																																																																																																																																							
	C-통합형				398,000	3,586,000	1,062,000	4,250,000	1,660,000	4,980,000																																																																																																																																																																							
	C-라형				916,000	3,068,000	1,647,000	3,665,000	2,324,000	4,316,000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서비스 제공기관 닥터맘 전북지사, 미소피아, 도우누리 전주온케어, 산모피아 전북지점, 에스엠천사, 온유맘케어, (YWCA)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조은맘(익산, 군산점), 참사랑어머니회, 친정맘, 바우처베스트맘, 해피케어, 행복맘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9.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GHA001)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 454-5858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p>사업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기준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기저귀(월80천원/월), 조제분유(월100천원/월)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방법 :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할 시,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영아 부모), 대리인 위임장·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table border="1" data-bbox="376 1731 1509 1982"> <thead> <tr> <th>신청일</th> <th>총 지원금액(천원)</th> </tr> </thead> <tbody> <tr> <td>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 째 날</td> <td>80천원×24개월=1,920</td> </tr> <tr> <td>출생일 기준 61일 째 날~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td> <td>80천원×22개월=1,760</td> </tr> <tr> <td>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td> <td>80천원×21개월=1,34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td> <td>80천원×1개월=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할 시, 24개월 모두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후에 신청할 시 24개월 되기 전 남은 개월 수 지원 	신청일	총 지원금액(천원)	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 째 날	80천원×24개월=1,920	출생일 기준 61일 째 날~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80천원×22개월=1,76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80천원×21개월=1,344	⋮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80천원×1개월=80
신청일	총 지원금액(천원)												
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 째 날	80천원×24개월=1,920												
출생일 기준 61일 째 날~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80천원×22개월=1,76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80천원×21개월=1,344												
⋮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80천원×1개월=80												

서비스 제공기관	㉠ 지원방법 :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래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래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래시
	국민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GS25편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신청기간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첫만남이용권사업

20. 첫만남이용권사업(FEG001)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454-3253

<p>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p>사업 대상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p>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 방문신청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p>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아당 200만원(1회)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본인부담금 : 없음
<p>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소, 레저업소,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p>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사용종료일) 이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3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2023. 3월말 현재)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1	가사간병방문 (4개소)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중양로 169, 농협3층(중양로1가)	김인숙	463-4191
2		군산재가사회서비스센터	신영1길 20-3(평화동)	김경임	070-8836-1227
3		나눔노인케어센터	진포2길 18(수송동)	고석자	070-7804-2727
4		복받는실버요양센터	조촌안1길 22, 401호(조촌동)	유호인	070-8899-9138
5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20개소)	군산언어심리센터	공단대로 441, 2층(나운동, 상우빌딩)	진홍선	464-7120
6		군산언어발달연구소	수송로 163, 3층(수송동, 예봉프라자)	양혜선	465-5997
7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월명로 215, 403호(수송동, 씨티월드)	김설화	466-6454
8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 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김은화	468-8396
9		에디슨아동발달센터	신평안길 54-3, 101호(지곡동, 씨니빌)	유재훈	464-9910
10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수송동로 105 702동 101호(수송동, 제일@)	이선자	452-3642
11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대학로 245, 202호(나운동, 라파빌딩)	송려원	465-9999
12		이화아동발달조기교육원	청소년회관로 47-7(송풍동)	김순복	471-6040
13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수송로257, 3층(미장동, 금강빌딩)	안영신	910-7555
14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축동1길7, 4층(수송동, 성우빌딩)	박숙현	466-8322
15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공단대로 292, 3층(수송동, 백토빌딩)	유선미 홍순미	465-7808
16		소리엘언어심리센터	나운로 4, 306호(문화동, 현대코아 3층)	김미순	465-9799
17		재미아이발달운동센터	신지길 29(지곡동)	김수미	910-1304
18		움직임 놀이터	나운로 4, 303호(문화동, 현대코아)	황선숙	442-0575
19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 1길 19, 202호(나운동, G빌딩)	노지숙	454-9592
20		브레인톡	하신 1길 19-3(나운동)	채수지	910-9003
21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공단대로 396, 3층(나운동, 고려빌딩)	안현정	242-4192
22		군산사랑나무운동발달센터	나운안 1길 19, 201호(나운동, G빌딩)	김지혜	468-0942
23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	나운로 13, 2층(나운동)	권오선	465-1774
24		군산공감발달연구소	옥산면 당북길 33, LK빌딩 201호	임은정	910-3330

2023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2023. 3월말 현재)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1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3개소)	에디슨아동발달센터	신평안길54-3,101호(지곡동, 써니빌)	유재훈	464-9910
2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1길 19, 202호(나운동, G빌딩)	노지숙	464-9592
3		소리엘언어심리센터	나운로4 306호(문화동, 현대코아 3층)	김미순	465-9799
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2개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김은화	468-8396
5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월명로 215, 403호(수송동, 씨티월드)	김설화	466-6454
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4개소)	(유) 좋은이웃	공단대로 454, 2층(나운동)	김은진	070-753-7979
7		사회적협동조합 자운	성산면 환동길 13, 1층	정은아	465-8161
8		감사합니다협동조합	칠성안2길 40, 1,2,3층	김한희	465-6539
9		행복나눔장애가족공동체	미장안길 60 5동 208호(미장동, 통큰타운)	안영신	910-7555
10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유) 좋은이웃	공단대로 454, 2층(나운동)	김은진	465-1876
11	방과후활동 (2개소)	행복나눔장애가족공동체	미장안길 60 5동 208호(미장동, 통큰타운)	안영신	910-7555

2023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3. 3월말 현재)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장형) (23개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김은화	468-8396
2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월명로215 4층403호(수송동, 시티월드)	김설화	466-6454
3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축동1길 7, 4층(수송동, 성우빌딩)	박숙현	466-8322
4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수송동로105, 702동101호(수송동, 제일@)	이선자	452-3642
5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대학로245, 202호(나운동, 라파빌딩)	송려원	465-9999
6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공단대로292, 3층(수송동, 백토빌딩)	홍순미	465-7808
7		군산미술심리아트앤하모니	계산2길 87-35, 1층(지곡동)	이봉순	467-4894
8		군산언어발달연구소	수송로 163, 3층(수송동, 예봉프라자)	양혜선	465-5997
9		군산언어심리센터	공단대로441, 6층(나운동, 상우빌딩)	진홍선	464-7120
10		움직임 놀이터	나운로4, 303호(문화동, 현대코아)	황선숙	442-0575
11		에디슨아동발달센터	신평안길 54-3, 101호 (지곡동, 씨니벨)	유재훈	464-9910
12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1길 19, 202호 (나운동 G빌딩)	노지숙	464-9592
13		소리엘언어심리센터	나운로4, 306호(문화동, 현대코아)	김미순	465-9799
14		아티스군산	수송로204, 4층(수송동, 전진빌딩)	오지연	466-3900
15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나운 5길 46, 2층 (나운동)	장명진	070-8833-6235
16		브레인톡	하신1길 19-3(나운동)	채수지	910-9003
17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공단대로396, 3층(나운동, 고려빌딩)	안현정	242-4192
18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수송로257, 3층(미장동, 금강빌딩)	안영신	910-7555
19		문희예술심리상담소	대학로 305, 2층(나운동)	문희	467-3938
20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	대학로558, 210호(군산대 두드림센터)	장미자	469-4629
21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비전센터	수송안1길 15-4, 1층 10호(수송동)	전순애	468-3075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22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7개소)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나운로 61, 4층 401호(나운동)	김기옥	911-7199
23		노아심리발달센터	궁포안2길 24, 501(조촌동)	김미정	442-1014
24		창의개발협동조합	대명길 14-12(대명동)	강미라	445-1412
25		맘투맘심리상담센터	하나운로 23(나운동)	장명진	070-8833-6235
26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축동1길 7, 4층(수송동, 성우빌딩)	박숙현	466-8322
27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수송로257, 3층(미장동, 금강빌딩)	안영신	910-7555
28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김은화	468-8396
29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공단대로 396, 3층B(나운동, 고려빌딩)	안현정	242-4192
30		노아심리발달센터	궁포안2길 24, 501(조촌동)	김미정	442-1014
31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7개소)	센트럴심포니 오케스트라	월명로 410(미원동)	고우리
32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1길19, 202호 (나운동 G빌딩)	노지숙	464-9592
33	아트심포니		공항로250, 2층(산북동)	최윤섭	462-7739
34	문희예술심리상담소		대학로305, 2층(나운동)	문희	467-3938
35	협동조합 아토		월명로495, 2층(월명동)	고동우	465-6153
36	사운드오브뮤직센터		수송로 204, 4층(수송동, 전진빌딩)	김혜린	461-3113
37	동아음악&놀이센터		산북로 58(산북동)	김정훈	912-9127
38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2개소)	100세건강(A형:수중)	황령로 57(미룡로)	강기리	468-5016
39		유순정에어로빅(B형:마루)	서흥2길 57, 3층(서흥남동)	유순정	465-1410
40	장애인보조기 렌탈(1개소)	희망숲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686, 303-1호	조수민	070-4122-9233
41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5개소)	통증잡는백경안마원	월명로 233, 2층 (수송동, 효원월드)	경남호	468-1444
42		제일경락안마원	대학로 342, 811(나운동, 동아26빌딩)	송문경	466-9980
43		행복안마지압원	팔마로 77(서흥남동)	이정숙	465-9788
44		건강회생안마원	나운로4, 2층(문화동, 현대코아)	김종상	443-1331
45		장진지압안마원	미장14길 35, 301호(미장동)	장종진	454-8151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46	정신건강 토달케어 서비스 (5개소)	규란복지재단	둔배미길 6-2(미원동)	윤규열	442-4594
47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1길 19, 202호 (나운동 G빌딩)	노지숙	464-9592
48		청춘스케치	대야면 대야관통로 57	한선님	452-7598
49		혜원복지센터	구영 1길 67, 205호(금동)	이정현	442-0486
50		협동조합 늘배움터	대학로 164(나운동)	류영희	446-5632
51	청소년비전 형성 (2개소)	이름	수송로 86, 1동 203호(나운동)	정문관	452-2679
52		협동조합 아토	월명로 495, 2층(월명동)	고동우	465-6153
5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5개소)	이름	수송로 86, 1동 203호(나운동)	정문관	452-2679
54		아티스군산	수송로 204, 4층(수송동, 전진빌딩)	오지연	466-3900
55		지품협동조합	해망로 86, 1층(중동)	황정숙	445-1902
56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군산지부	대학로 600, 전북사회경제혁신타운 413호	송석문	732-9261
57		필레오심리상담센터	신지길 12(지곡동)	이혜진	466-1325
58	스포츠활동 건강관리 (4개소)	(사)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신평길 53(송풍동)	위길숙	468-1290
59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	나운로 13, 2층(나운동)	권오선	465-1774
60		사람과사람들	상나운로 12, 2층, 3층(나운동)	이창근	471-3854
61		드림허브 군산에프엑스	동개정길 20(개정동)	채윤수	461-7400
62	노인문화 여가토달 서비스 (7개소)	협동조합 늘배움터	대학로 164(문화동)	류영희	446-5632
63		진로커리어연구소	신촌2길10, 103호(조촌동)	김선숙	451-4572
64		한국진로코칭센터	번영로 197(조촌동)	양순이	451-7907
65		(사)한누리	중정1길 3, 2층(중앙로1가)	김경숙	443-1005
66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나운로 61, 401호(나운동)	김기옥	911-7199
67		100세건강	황룡로 57(미룡동)	강기리	468-5016
68		유순정에어로빅	서흥2길 57, 3층(서흥남동)	유순정	465-1410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69	노인맞춤형 주거관리 (2개소)	마을활력소이음협동조합	나포면 나포초교길3(나포면)	박세훈	452-5034
70		진로커리어연구소	신촌2길 10, 103호(조촌동)	김선숙	451-4572
68	청소년재활 승마지원 (1개소)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칠성로 59(산북동)	황성덕	461-6555
69	글로벌 마인드 형성서비스 (4개소)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칠성로 59(산북동)	황성덕	461-6555
70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대학로 600, 전북사회경제혁신타운 413호	송석문	732-9261
71		글로벌마인드형성센터	하나운로 18, 206호(나운동, 한울@상가)	안철희	010-8280-2633
72		꿈누리	수송1길 19, 202호(수송동,서경빌딩)	김진협	467-5546
73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10개소)	본 심리상담센터	축동안3길 24, 201호(수송동)	김숙경	465-2592
74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 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김은화	468-8396
75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비전센터	수송안1길 15-4, 103호(수송동)	전순애	468-3075
76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나운5길 46, 2층(나운동)	장명진	070-8833-6235
77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나운로 61, 4층 401호(나운동)	김기옥	911-7199
78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	대학로 558, 210호(군산대 두드림센터)	장미자	469-4629
79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축동1길 7, 4층(수송동, 성우빌딩)	박숙현	466-8322
80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대학로 245, 202호(나운동, 라파빌딩)	송려원	465-9999
81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공단대로 396, 3층(나운동, 고려빌딩)	안현정	242-4192
82		아름드리심리상담센터	번영로 72(경장동)	김현옥	446-5413
83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12개소)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나운로 61, 4층 401호(나운동)	김기옥	911-7199
84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동조합	대학로 558, 210호(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장미자	469-4629
85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 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김은화	468-8396
86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월명로 215, 4층 403호(수송동,시티월드)	김설화	466-6454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87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수송로 257, 3층(미장동,금강빌딩)	안영신	910-7555
88		본 심리상담센터	축동안 3길 24, 201(수송동)	김숙경	465-2592
89		아름드리심리상담센터	번영로 72(경장동)	김현옥	446-5413
90		아이전북심리발달연구소	축동1길 7, 4층(수송동,성우빌딩)	박숙현	466-8322
91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공단대로 396,3층(나운동,고려빌딩 B동)	안현정	242-4192
92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대학로 245, 2층 202호(나운동,리파빌딩)	송려원	465-9999
93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비전센터	수송안1길 15-4,1층 103호	전순애	468-3075
94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나운5길 46, 2층(나운동)	장명진	070-8833-6235
95	청년산체건강 증진 (1개소)	(사)한국문화예술교육원(전주)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37, 상기동 308호 * 군산 추가확보시설 등록 예정	송석문 (군산지부)	212-9162